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12월 1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방역정책과 과 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사무관 박경일(2519)/ 제공일: 12월 9일 (총 4매)		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

- 2019.12.10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 -

- ◆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

【주요 개정 내용】

- ◎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기존 6개월까지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됨(제12조)
- ◎ 해당 시·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(제13조제1항)
- ◎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농장 초소 등 통제초소를 광범위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 일부 지원(제13조제3항)
- ◎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지원하기 위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(2019.9.16)한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(부칙)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: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·김포·강화·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.

-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·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,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을 정비하였다.

□ 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- ① (생계안정자금)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(월)을 지원한다.

- ◆ (지원 내용)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
- ◆ (지원 기준)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,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*를 설정
- * 농가당 지원한도 :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

- 다만,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위하여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였다.(제12조)
- 이로써,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하여 그 상한액을 “6개월분 이상”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.

- ② (살처분처리, 매몰 지원) 살처분 처리 인건비,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,

- 해당 시·군의 전체 또는 절반(50%)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*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.(제13조제1항)

* 4개 지자체 : 파주시, 김포시, 연천군, 강화군

- ③ (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)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시에만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(50%) 지원 가능하였다.

-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(제13조제3항)

-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
- 그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(2019.9.16)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(부칙)

참고

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」 주요 개정 내용

구 분	주 요 개 정 내 용
제12조	○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상한액을 가축전염병의 종류, 가축의 소유자 등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 - (기존) 생계안정비용 상한액 6개월분 → (개선) 6개월분 이상 상향 조정 가능
제13조 제1항	○ 구제역, 고병원성 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 또는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 실시 비용이나 가축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·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- (기존) 살처분 처리 비용 전액 지자체 부담 → (개선) 해당 시·군 전체 또는 50% 이상 살처분 지자체에 대해 국비 일부 지원
제13조 제3항	○ 국가가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- (기존) 구제역, 고병원성 AI 발생시 통제초소 비용 지원 → (개선) 구제역, 고병원성 AI,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지원